퇴 직 보 험 약 ·

퇴직보험 약관

제1조【단체 및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 ① 이 보험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단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라 함은 동일 보험계약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속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합니다.
-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 3.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

제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가입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장래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표하며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명의로서 계약상 또는 계약외 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 2. 노동조합이 없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과반 수 미만일 경우 노사협의회 대표 (단,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 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 ③ 계약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자로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기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 선정 확인서"를 제출받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또는 제9조 (협정서내용의 결정 및 변경)에 의한 협정서 작성 등 필요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5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금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를 경유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퇴직급부의 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퇴직보험계약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퇴직보험계약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퇴직보험계약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퇴직보험계약협정서 (이하"협정서"라 합니다)에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계약에 관한 사항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사항
 - 3. 보험료에 관한 사항
 - 4. 예정사업비에 관한 사항
 - 5. 급부에 관한 사항
 - 6.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통지사항
 - 7. 협의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협정서 내용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이후 계약자는 퇴직금관련규정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 및 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제1호 중 보험세목은 매년 계약응당일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서 상의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필요에 따라 장래의 기본보험료(제18조 제1호의 기본보험료)를 변경하고, 협정서를 정정하거나 또는 다시 작성하여 드립니다.

제10조【목표적립비율의 결정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목표적립비율 (퇴직급여제도를 퇴직보험제도로 이행시 해당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재계산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와 협의한 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비율을 상향 또는 해당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보험계약의 해지 및 이전】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1.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계약자가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2.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3. 관계법률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1.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재내용상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0조 (급부등의 지급)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0조 (급부 등의 지급) 제3항에 의한 해당시점의 해지환급금에서 협정서에 의한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급기관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해지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방법】

- ① 제7조 (청약의 철회) 및 제11조 (보험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피보험자(보험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하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만 노사협의회 등을 말하며 이하 "대표기관"이라 합니다.]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노사협의회의 동의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측 대표위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동의에 대한 확인은 계약자가 회사에 제13조 (청약철회시, 해지시 또는 계약이전시 구비서류) 제1항 제2호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대표기관이 있는 경우 대표기관]의 동의 확인서(회사양식)"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청약철회시, 해지시 또는 계약이전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가 제7조 (청약의 철회)에 의한 청약철회시, 제11조 (보험계약의 해지 및 이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지시 또는 동조 제4항에 의한 계약 이전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퇴직보험 청약철회(해지, 계약이전)청구서(회사양식)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대표기관이 있는 경우 대표기관]의 동의 확인서 (회사양식)
 - 3. 노동조합 대의원 총회(노사협의회) 회의록 원본 또는 사본
 - 4. 해지환급금(해지시) 수령대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회사양식)
 - 5. 특별중도해지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6.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 사본(계약이전의 경우)
- ② 계약자가 제11조 (보험계약의 해지 및 이전) 제4항에 의한 계약이전시

등 해지환급금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이후 새로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단체의 오류 등에 의해 미가입한 자 중에서 이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가입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을 전제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추가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②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21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난 경우 에는 동조에서 정한 정상계약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추가가입을 중지합니다.

제15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탈퇴】

- ① 계약자는 퇴직 및 인수·합병·분사·관계사전출 등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로부터 탈퇴시킨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보험계약의 승계】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계약자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합니다.
- ② 관계사 전출, 분사 및 합병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계약(퇴직연금 포함)이

체결된 단체사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고용과 채권·채무가 포 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단체간 준비금 이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상속인을 포함합니다)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자로부터 사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보험료】

-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기본보험료 계약 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협 정서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재정안정화보험료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3. 연금충실화보험료 연금급부를 충실화하여 노후생활에 대비하고자 하는 종업원을 위해 기 업이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퇴직금관련규정에 정한 퇴직금과 이 계약의 퇴직급부와의 差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으로 합니다.

제19조【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제1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의 규정에 따라 추가가입하고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가입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그 추가가입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에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 대한 계약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협정서에 정한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② 제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기일을 특별히 협정서에 정한 경우, 제3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납입기일은 제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기일의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른 다음 계약응당일로 합니다.
- ③ 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으로 합니다.
- ④ 추가가입자에 대한 기본보험료는 이미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료 납입방법이 비연납인 경우에 계약자는 당해 보험년도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의 남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보험료는 납입방법에 따른 납입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합니다.

⑥ 정기재계산일을 계약응당일이 아닌 다른 날로 협정서에서 정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 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 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 립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고,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난 때(이하"납입연체계약"이라 합니다)에는 해당 보험료 납입 전 적립비율을 기준으로 퇴직급부를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는 납입연체계약에 대해 정상계약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미납입보험료 또는 납입 전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누어 납입하는 경우, 해당 미납입보험료 등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상계약으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는 계약이 납입연체 상태로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보험료 등의 재계산】

- ① 회사는 계약일(또는 협정서에서 정한 날)로부터 매5년마다 기본보험료 등을 재계산하며, 퇴직금 제도변경, 명예퇴직, 정리해고, 퇴직금중간정산 등 장래급부채무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을 한 경우 책임준비금이 목표적립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료에서 초과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계산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으로 인해 책임 준비금이 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급부의 산출 방법】

회사는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해당 단체의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퇴직 급여추계액 대비 직전 보험료납입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시점의 책임준 비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4조【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산출하여 책임준비금에 더하여 부리하되, 거치연금전환제 계약 및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25조【소멸시효】

급부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급부가 발생한 후 3년간 급부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급부를 지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제26조 【필요사항의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미리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의 산출 및 급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급부지급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동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알림이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내용에 기초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알림이 늦어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체결 전 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를 통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매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 상황 및 수급예상액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⑤ 회사는 제3항, 제4항의 경우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계약자의 신청에 의한 기타 방법(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급부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 23조 (급부의 산출 방법)에 정한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급부청구시의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제23조 (급부의 산출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급부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부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퇴직급부 청구서(회사양식)
 - 2. 단체 대표자 발행의 퇴직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퇴직의 경우)
-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4.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급부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3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서류 중 그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적용이율】

- ① 이 보험의 금리연동형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 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회사의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 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및 손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적용이율의 적용>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전체보험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제30조【급부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8조 (급부청구시의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급부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 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 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환급금을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직접 이전하며, 해지환급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대응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계약 해지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 퇴직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용이율(연복리 2.0% 최저보증, 이하 "적용이율"이라 합니다)은 제29조 (적용이율)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적용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적립됩니다.

- ⑤ 회사는 제2회이후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매년 첫번째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⑥ 해지환급금은 그 청구일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1조【급부받는방법의 선택】

- ① 급부의 지급형태가 연금인 경우에는 연금수급권 취득일 이후(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치기간이 지난 후로 합니다)의 급부지급 청구일을 연금지급개시일로 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가 인수하는 연금재원은 급부수급권 취득시점의 회사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전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래 지급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금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④ 급부의 지급형태가 일시금인 경우에는 일시금 수급권 취득일이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 ⑥ 연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며, 각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는 연금선택시(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치기간이 지난 후로 합니다) 그 적용이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확정금리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수한 연금재원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시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로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수한 연금재원을 각 연금지급시점의 연금원자로 할당하고, 이를 각각의 연 금지급시점까지 금리연동형의 준비금적립이율로 부리하여 지급합니다.
- ⑦ 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동안은 새로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을 지 급합니다.

- ⑧ 연단위 연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생존연금 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도 나누어 지급하는 연단위 연금의 미지급분은 새로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계속 지급합니다.
-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중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의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⑩ 제9항에 따라 선택한 일시금은 확정금리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회사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금리연동형의 경우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원자를 산출시점까지 금리연동형 준비금적립이율로 부리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① 회사는 제1회 연금을 지급할 때에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증서를 드립니다.

제32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목표적립비율)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4. 피보헊자(보헊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3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

계약자는 퇴직급부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 징수의무를 갖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34조【퇴직급부금 지급시 공제】

회사는 퇴직급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전환분 및 계약자가 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세 등이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분을 공제한 후 지급합 니다.

제35조 【보험계약대출】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임원계약의 특별취급】

- ① 임원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이하 "임원피보험자"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중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의하는 임원으로 합니다.
- ② 임원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기본보험료 및 과거근무채무 등을 산출하는데 있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거치연금전환제의 특별취급】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 에 대하여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공동계약】

이 보험의 계약은 계약자가 2개 이상의 취급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기관 들 간에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계정 (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② 이 보험의 특별계정은 운용손익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리체계가 적용되나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원리금보장형으로 합니다.
- ③ 이 보험에서 설정한 개별 특별계정 자산의 종류는 보험업법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급부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급부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 (급부 등의 지급)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부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7조【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을 위한 증명서류 발급】

회사는 계약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부담금의 경감)의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퇴직보험의 적립비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속기간 등가입 사실의 증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48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드립니다.

퇴직보험 거치연금전환제특칙

제1조【특칙의 적용】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거치 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 (이하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이라합니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료】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연금충실화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총퇴직급부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급부와의 차이금액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합니다.

제3조【운용방법의 선택】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확정금리형 또 는 금리연동형 중에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급부의 지급】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의 급부지급액은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거치원리금을 기준으로 산출한연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거치기간 중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 언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된 부분의 거치원리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거치원리금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6조【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7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